

2026. 6.

일본 도쿄지방법원, 영화 등의 내용을 글로 옮긴 행위에 번안권¹⁾ 침해 인정

건국대학교 KU글로벌혁신대학/부교수
권용수

1. 개요

피고인 X는 정보 사이트 운영회사의 대표이다. X는 도호(東宝)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고질라 -1.0’과 카도카와 주식회사 외 4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3기 제1화’의 등장인물, 대사나 행동, 장면과 흐름 등 스토리 전반을 외부 작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문자로 옮기고, 관련 이미지와 함께 기사로 만들어 자사 사이트에 공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위의 기사로 인한 저작권 침해(번안 등)만이 문제 되었지만, X는 해당 기사 외에도 다수의 유사한 기사를 공개한 것이 확인되었다.

X는 영리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기사를 반복·계속해서 공개해 다수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였고, 부당한 광고 수익을 취해 왔다.

도쿄지방법원은 4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X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고, 구금형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엔을 병과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외부 작가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6일 50만 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요내용

1)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장화된 기사가 원작 영화·애니메이션의 ‘번안’에 해당하는가였다.

변호인 측은 영화의 감동은 영상·음악·연기를 토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 문장으로 등장인물이나 내용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영화 ‘고질라 -1.0’에 관한 기사가 3,000자를 넘고 시작부터 결말까지의 줄거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나 관련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한 가운데 ‘작품의 주요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영화의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며 번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덧붙여, 영

1) 우리나라 저작권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의미함

화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작자 측의 수익구조나 문화 발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범행이라는 것, 저작권에 관한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 광고 수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 검토

이 사건 판결의 법적 핵심은 ‘번안’에 관한 해석이다.

저작권법상 번안은 기존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창작적 변경을 가해 별도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 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에사시 오이와케 사건(江差追分事件)²⁾에서 번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고, 그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표현에 수정·증감·변경 등을 가해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자가 기존 저작물의 표현상 본질적 특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별도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인지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판사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문자 매체로 변환한 것이더라도, 설명의 양이나 정도, 관련 이미지 포함 등을 토대로 원작의 표현상 본질적 특징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번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영상 작품을 문자로 바꾸더라도 ‘번안’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판단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문화 발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범행’이라는 표현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함을 매우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이념과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 침해가 창작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 광고 수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무겁다’라는 양형 이유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습적인 영리 범죄에 대한 사법의 엄격한 태도를 나타냈다. 집행유예가 붙긴 했지만, 벌금 100만 엔은 구형대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의 배경에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업계가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스포일러 기사·해적판 사이트 문제가 있다. 이번 판결은 영상이 아니라 문자에 의한 스포일러에도 형사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업계의 법적 대응 수단을 한층 더 강화하였고, 유사한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었다. 변호인 측이 항소한 만큼 향후 항소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이번

2) 江差追分事件・最三小判平成13年6月28日.

판결의 영향이 인정된다.

첫째, ‘매체를 넘나드는 번안’의 인정 가능성이다. 종래 번안 해당성은 소설에서 소설 또는 영화에서 영화와 같이 동일 매체 내에서의 파생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사건은 영화·애니메이션을 문장으로 옮기는 행위 역시 일정 경우 번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유튜브 영상을 문자로 설명하는 블로그, 만화를 소설화한 동인 작품,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문자 전송 등 인터넷상에 널리 존재하는 파생 콘텐츠에 대한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평론·리뷰와의 관계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는 인용을 적법한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 평론·리뷰·비평 기사는 통상 인용의 범위 내에서 작품 내용을 언급한다. 이번 판결을 전제로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상세한 줄거리 작성은 ‘번안’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적법한 평론·리뷰 작성 기준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3,000자가 넘는 상세한 설명을 번안 판단 요소로 언급했지만, ‘작품의 주요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언급에 주목해 보면 1,000자 정도의 평론·리뷰나 저명한 영화평론가가 잡지에 기고한 상세한 작품 평가 취급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관한 판례의 축적·발전이 요구된다.

셋째, 영리 목적의 중요성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형량 이유로 피고인이 광고 수입을 목적으로 반복·계속해서 스포일러 기사를 공개한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일회성의 팬 활동과 상업적·조직적 스포일러 기사 공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무료 블로그·트위터 등 팬의 정보 공개에도 파급을 미칠지 해석상 불확실한 면이 있다.

참고 자료

- <https://coda-cj.jp/news/2742/>
- https://saibankan-map.jp/featured/2026-04-17?utm_source=chatgpt.com
- <https://note.com/keiichirohattori/n/n5138987ed484>
- https://www.courts.go.jp/assets/hanrei/hanrei-pdf-52267.pdf?utm_source=chatgpt.com